

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1. 11. 29.
복지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1. 11. 16. 마포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21. 11. 17.
- 다. 상정일자 : 제25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위원회(2021. 11. 29.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여성가족과장

가. 제안이유

다양한 사회 경제적 문제로 인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하고 마포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가사서비스 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하여 저출산 문제에 대해 적극 대처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기존 조례의 명칭 변경
 - 『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』
 - 『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』

-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 시행계획 수립 및 지원내용
(안 제3조~제4조)
-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5조~제9조)
- 가사서비스 지원에 관한 규정 신설(안 제10~제13조)
 - 가사와 양육부담이 큰 “만 8세 이하 자녀를 세 명 이상 양육중인 가정”에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근거를 마련하고,
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
- 교육 및 홍보, 표창, 중복지원 금지 신설(안 제14조~제17조)

3. 검토보고 (박춘주 전문위원)

-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가속화 되는 저출산 현상을 막기 위한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기존의 “출산축하금 지급”이라는 일시적인 출산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저소득 다자녀가정에 가사서비스를 제공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양육 지원까지 포함한 “출산 및 양육지원”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.
-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
 - “출산축하금 지급”에서 가사서비스 제공을 포함한 “출산 및 양육지원”으로 기존 조례 명칭을 변경하고
 -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‘출산축하금’과 ‘가사서비스’에 대한 용어를 규정하였으며
 -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『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』 제21조제1항에 따른 출산 및 양육지원 시행계획 수립과 지원사업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고

-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기존 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출산축하금에 대한 신청에서부터 지급관리까지 과정을 새롭게 정리하여 규정한 사항으로 출산축하금 지급기준에 대한 변동은 없음

〈 마포구 출산축하금 지급 현황 〉

(단위 : 명, 천원)

구 분		계	첫째 (10만원)	둘째 (50만원)	셋째 (100만원)	넷째 (300만원)	다섯째 이상 (500만원)
2020년	인원	1,913	1,201	620	84	4	4
	금액	546,100	120,100	310,000	84,000	12,000	20,000
2021년 (9월 기준)	인원	1,423	883	478	54	8	0
	금액	429,800	88,300	263,500	54,000	24,000	0

- ☞ 참고로 우리 구에서 지급하는 출산축하금과 별도로 보건복지부의 신규 사업으로 2022년1월1일 이후 출생아동에게 첫 만남 이용권(200만원)을 지급예정이며 이는 출생아동 모두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고 제16조에 의거 출산축하금과 중복으로 지급은 불가하며
- ☞ 본 개정조례에 의한 출산축하금 지급은 내년에는 2021년12월31까지 출생한 아동까지만 출산축하금이 지급예정이며 이후에는 첫 만남 이용권과 관련한 보건복지부의 『저출산·고령사회 기본법』의 개정사항 시행 등에 맞춰서 출산축하금 지급 관련 조항의 정비를 결정해야 할 것임
-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가사서비스 지원을 위한 관련 규정들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
- 안 제10조는 가사서비스 지원 신청서 제출에 대한 규정을

- **안 제11조**는 가사서비스 지원대상 자격요건에 대한 규정으로 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의 만8세 이하 자녀 3명을 양육하는 6개월 이상 거주 마포구민으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으며

< 2021년 중위소득 100%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>

구분(2021년)		4인	5인	6인	7인
중위소득(100%)		4,876,000원	5,757,000원	6,629,000원	7,497,000원
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	직장	168,195원	200,355원	228,860원	257,849원
	지역	171,434원	212,560원	248,783원	284,709원
	혼합	170,536원	203,558원	233,144원	263,923원

- **안 제12조**는 가사서비스 지원내용으로 1일 4시간, 주1회, 월 최대 4회까지 지원하며 가사서비스는 청소 및 세탁으로 한정하는 규정이며 이용자의 자기부담금은 10%로 ‘세 자녀 이상 가정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신청서’에 명시 되어 있음
- **안 제13조**는 출산 및 양육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
- **안 제16조**는 다른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사유의 중복지원 금지와 등록장애인 등에 대한 중복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

○ **검토결과**

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출산장려 정책 일환으로 추진하는 출산축하금 지급이라는 단편적인 정책과 더불어 자녀 양육부담이라는 개인적인 영역의 가사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영유아를 세 자녀 이상 양육하는 저소득 가정에 가사부담 경감을 위한 가사서비스 제공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 함이며 이를 통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

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다소나마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 전 부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바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※ 참고 자료

1. 관련법규

2. 비용추계서

[관계법령]

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

[시행 2014. 3. 18.] [법률 제12449호, 2014. 3. 18., 일부개정]

제10조(경제적 부담의 경감)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·출산·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 5. 23.>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·출산·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제21조(연도별 시행계획)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고,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

장애인복지법

[시행 2021. 10. 28.] [법률 제18333호, 2021. 7. 27., 일부개정]

제32조(장애인 등록) ①장애인,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(이하 “법정대리인등”이라 한다)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게 등록하여야 하며,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(이하 “등록증”이라 한다)을 내주어야 한다.

장애인연금법

[시행 2020. 6. 11.] [법률 제16761호, 2019. 12. 10., 타법개정]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중증장애인”이란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되는 등 장애 정도가 중증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

[비용추계서]

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-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 및 양육에 관한 조례 제11조

2. 비용추계의 전제

가. 셋째아 이상 가정의 가사서비스지원

나. 비용추계기간 : 2022. 1. ~ 2026. 12.(60개월)

3. 비용추계의 결과

(단위 : 천원)

연 차 별 (5개년)	1차년도 (2022)	2차년도 (2023)	3차년도 (2024)	4차년도 (2025)	5차년도 (2026)	합계
소요예산	110,300	132,000	142,000	152,000	162,000	698,300

4. 재원조달 방안

- 일반회계 세출 예산 편성

5. 덧붙이는 의견

- 비용추계의 세출은 차후 사업내역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6. 작성자 : 복지교육국 여성가족과 이애련(☎ 3153-8925)

-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- 5. 토론요지 : 없음
- 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- 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- 8. 기타 : 없음